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374 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4월 12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·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(안 제1조 ~ 제4조)
- 생산·공급 및 공급대상 (안 제5조 ~ 제7조)
- 점검·조사 및 공급제한 등 그 밖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 : 환경과, 주소 :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5층 환경과 전화 : 02-3396-5602, 팩스 : 02-3396-8759, email : sy0723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 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·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유용미생물(EM: Effective Micro-organisms)”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.
2. “유용미생물품”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(이하 “유용미생물 등”이라 한다)의 지속적인 생산·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·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유용미생물 생산·공급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
2.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·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공급대상)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2.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, 단체 및 법인 (이하 “대상기관”이라 한다)

제6조(생산 및 공급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·공급 할 수 있다.

1.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·홍보
2.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
3. 구 내 어린이집,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
4. 친환경 공공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.

제7조(활동계획서 등 제출)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
2.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
3.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·조사 협조

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

사용하여야 한다.

제8조(점검·조사)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공급제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2.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3.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0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EM제조기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